



## 『집콕마켓』 정보공개서

(주)디딤이앤에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디딤이앤에프

####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016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 12. 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8. 09.

#### 『집콕마켓』 가맹사업본부 (주)디딤이앤에프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전화번호	032-819-6870	팩스번호	032-815-6870
가맹사업 담당부서	집콕마켓 가맹팀	담당자 전화번호	1544-6092
홈페이지	http://didimfood.co.kr	담당자 이메일	franchise@didimfood.co.kr

##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1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별첨 2 ] 당사가 권장하는 주방 및 홀 기물 공급 품목

[ 별첨 3 ] 주요 공급 품목의 거래형태

[ 별첨 4 ]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 소개



**(주)디딤 코스닥 상장**  
2017년 8월 31일

직영사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를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외식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주)디딤 임직원일동

DDM **KOSDAQ**<sup>1</sup>

H · 회사소개 · 디딤

건전한 선진국형 외식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 (주)디딤입니다.

(주)디딤은 30평 남짓의 작은 갈비집에서 출발하여, 축산물 및 식품제조공장을 설립, 마포갈매기브랜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기업으로, 더 나아가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기업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여 고객과 함께성장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한식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외식 기업



소통하는 기업

조직내/외부로 원활히 소통하며 직원과 파트너모두 함께 성장하는기업

##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디딤이엔에프	영업표지	집콕마켓 외 26개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3.30.	2015.03.30.	김대은	032-819-6870	032-815-6870
법인등록번호	110111-5680643	사업자등록번호	896-81-00036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대은 (주)디딤이엔에프	집콕마켓 외 26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은	032-819-6870	032-815-68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상훈 (주)디딤이엔에프	집콕마켓 외 26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은	032-819-6870	032-815-68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성훈 (주)디딤이엔에프	집콕마켓 외 26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은	032-819-6870	032-815-68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정해곤 (주)디딤이엔에프	집콕마켓 외 26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24(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은	032-819-6870	032-815-687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정담유통 주식회사	배달삼겹돼지 돼지	2023.03. 09.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A동 214호(상가동) (상도동, 상도2차 두산위브트레지움)	이정민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집콕마켓』	
상 호	『집콕마켓』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집콕	출원번호 40-2020-0072384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50,739,323	49,967,306	772,016	52,334,472	-5,982,058	-18,226,785
2022년	71,892,273	61,440,423	10,451,850	60,863,892	-5,301,471	-8,779,824
2021년	58,918,170	48,538,792	10,379,378	61,845,607	-6,061,987	-5,333,602

※ 그 근거자료는 [ 별첨 1 ]과 같습니다.

※ 당사는 2022년 재무제표부터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관련사항은 별첨된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김대은	대표이사	2024.03.27. ~ 현재	㈜디딤이엔에프 사내이사	
		2024.04.29. ~ 현재	㈜디딤이엔에프 대표이사	업무 총괄
김상훈	사내이사	2024.03.27. ~ 현재	㈜디딤이엔에프 사내이사	-
박성훈	사외이사	2024.03.27. ~ 현재	㈜디딤이엔에프 사외이사	-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정해곤	감사	2024.03.27. ~ 현재	㈜디딤이엔에프 감사	-

☞ 당사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변동이 많은 관계로 추후 확정 되는대로 변경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2	9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했거나 경영한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사업기간	사업내용
1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新마포갈매기	20090100099	한식	2008.07.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호랭이곱창	20150047	한식	2012.12.18.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3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애플삼겹살	20160031	한식	2016.03.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4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고래식당	20161233	한식	2017.03.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5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고래감자탕	20170223	한식	2017.04.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6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황금식당	20170659	한식	2017.07.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7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연안식당	20171421	한식	2017.12.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8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연안해물칼국수	20171422	한식	2017.12.0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9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차돌6키로	20180140	한식	2018.02.13.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0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미추냉삼	20181285	한식	2018.12.11. ~ 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1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마포후갈비찜	20190866	한식	가맹점 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2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한라담	20190828	한식	가맹점 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3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연남숯불닭갈비	20190867	한식	가맹점 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4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반달전집	20190865	한식	가맹점 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5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도시수산시장	20200860	한식	2020.08.22.~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6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공화춘	20200861	중식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7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고래감자탕 딜리버리	20201447	배달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8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번개두마리 찜닭	20201449	배달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19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염소해장국	20201451	한식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해장냉면	20201450	배달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1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코리앗치킨	20201448	치킨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2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코리앗치킨 딜리버리	20201444	배달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3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서해물총칼국수	20201446	한식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4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마포옥고급 소갈비	20201666	한식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5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집콕마켓	20201665	(건강)식품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6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디딤이엔에 프딜리버리	20210683	배달	가맹점모집중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7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배달삼겹 돼지되지	20170464	한식	2016.07.25.~현재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출원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집콕	제35류	출원 2020.04.29.	제40-2020-0072384호	(주)디딤이엔에 프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일부는 현재 (주)디딤이엔에프 법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집콕마켓』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중

2. 『집콕마켓』 연혁

☞ 『집콕마켓』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디딤	집콕마켓	이정민	가맹점 모집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이정민	가맹사업 준비중 (2022.11.21.상호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임재준	가맹사업 준비중 (2023.04.10.대표자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박승복	가맹사업 준비중 (2023.07.14.대표자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이정민	가맹사업 준비중 (2023.09.08.대표자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이용호	가맹사업 준비중 (2024.03.26.대표자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김대은	가맹사업 준비중 (2024.04.29.대표자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3. 『해장냉면』 업종

☞ 『집콕마켓』 업종의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집콕마켓	(건강)식품	(밀키트용)국탕, 반찬, 안주류 도소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집콕마켓』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0	-	0	0	-	0	0	-	0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0	-	0	0	-	0	0	-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집콕마켓』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집콕마켓』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직영 및 가맹사업 현황(총 27개 브랜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사업 시작일	직영점/가맹점의 수(단위: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1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신마포갈매기	20171421	한식	2017.12.17.	1/100	1/96	1/76
2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연안식당	20171421	한식	가맹점모집중	4/112	2/69	1/33
3	가맹본부 (주)디딤이엔에프	호랭이곱창	20150047	한식	2023.01.05.	0/0	0/0	0/0

4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공화춘	20200861	중식	2023.01.05.	4/0	4/0	0/4
5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애플삼겹살	20160031	한식	2016.03.01.	0/0	0/0	0/0
6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고래식당	20161233	한식	2017.03.01.	1/11	0/6	0/6
7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황금식당	20170659	한식	2017.07.01.	0/0	0/0	0/0
8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연안해물칼국수	20171422	한식	2017.12.01.	0/0	0/0	0/0
9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차돌6키로	20180140	한식	2018.02.13.	0/0	0/0	0/0
10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미추냉삼	20181285	한식	2018.12.11.	0/1	0/1	0/1
11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반달전집	20190865	한식	가맹점모집중	0/0	0/0	0/0
12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연남숯불닭갈비	20190868	한식	가맹점모집중	0/0	0/0	0/0
13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마포후갈비찜	20190866	한식	가맹점모집중	0/0	0/0	0/0
14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한라담	20190828	한식	가맹점모집중	3/0	3/0	0/0
15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도시수산시장	20200860	한식	2020.08.22.~ 현재	0/0	0/0	0/0
16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번개두마리찜닭	20201449	배달	가맹점모집중	-/-	0/0	0/0
17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염소해장국	20201451	한식	가맹점모집중	-/-	0/0	0/0
18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고래감자탕	20170223	한식	2017.02.26.	2/10	0/8	0/10
19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고래감자탕 달리버리	20201447	배달	가맹점모집중	-/-	0/0	0/0
20	가맹본부 ㈜디딤이엔에프	코리안치킨	20201448	치킨	가맹점모집중	0/0	0/0	0/0

21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코리앗치킨 딜리버리	20201444	배달	가맹점모집중	-/-	0/0	0/0
22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서해물총칼 국수	20201446	한식	가맹점모집중	-/-	0/0	0/0
23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해장냉면	20201450	배달	가맹점모집중	-/-	0/0	0/0
24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마포옥고급 소갈비	20201666	한식	가맹점모집중	0/0	0/0	0/0
25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집콕마켓	20201665	(건강) 식품	가맹점모집중	0/0	0/0	0/0
26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디딤딜리버리	20210683	배달	가맹점모집중	-/-	0/0	0/0
27	가맹본부 (주)디딤이앤에프	배달삼겹 돼지되지	20170464	한식	2016.07.25.~ 현재	1/78	0/58	0/24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 사업 준비중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단위: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총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산출 가맹점 수
		총 매출액	면적(3.3m <sup>2</sup> )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sup>2</sup> )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sup>2</sup> ) 당 매출액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2년	-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 해당 없음 : 당사는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정하지 아니합니다.
- ※ 다만,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후 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금 예치절차

- ☞ 해당 없음 : 당사는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디딤이엔에프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집콕마켓』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약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b>합계</b>	<b>7,700,000</b>				(예외조건)
가맹비	5,500,000	계약 체결후 5일 이내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교육 시작 전일 이내 예치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진행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1. 당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사용 허락 (20%), 2. 영업지역 부여 (20%), 3. 입지 선정 시 조언 (10%), 4.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20%), 5.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20%), 6.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10%)

※ **가맹비 반환 조건** : 개점 이전 해지, 개점 이후 해지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당사는 가맹금 입금 후 설비공사 시작 전 양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정산 후 1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외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예치	당사 제공물품 파손 및 채무액, 로열티, 교육비, 광고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교육 훈련비 등의 채무액 또는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기간의 만료 및 해지로 인한 종료 시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제한 후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b>합계</b>	<b>10,700,000</b>	
가맹비	5,500,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2,200,0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부가세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b>합계</b>		<b>29,700,000</b>	<b>2,750,000</b>		33m <sup>2</sup> (구. 약10평)기준
간판/사인물	(요청시) 크래프트제이	7,700,000	770,000	주문과 동시	

주방 설비, 집기	하이키친	16,500,000	1,650,000	주문과 동시	
유니폼, 인쇄물	가맹본부	3,300,000	330,000	물품수량일	
오픈 홍보비	가맹본부	2,200,000	-	오픈 전	오픈이벤트및홍보물 (전단지, 배너, 포스터 등)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감독비 : 인테리어 등 설비는 가맹사업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당사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시공 매뉴얼(샘플 도면) 및 도면 감리, 현장 감리(3회) 등의 비용으로 서울경기권 매장은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포함>, 그외매장은 금칠백칠십만원(₩7,70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간판, 주방설비, 주방집기, 홀집기, 기타 소모품, POS, 초도물품 등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및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결과 및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을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품광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총비용의 50%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총비용의 25%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판촉물 제작 상품권 발행 분담금		해당 없음				제작 및 발행 총 비용 가맹본부 전부 부담
할인 및 경품 제공 판촉행사 분담금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판촉 실시 후 반환 안됨	판촉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서울경기 22만원 그외지역 33만원	교육 시작 전일까지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1명 기준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 시작 전일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월5,500원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대가 내역 :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지역 보호,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경영지도,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해당 없음		
회계처리	가맹점 매출액 현황 보고	월 1회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보고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집콕마켓』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 및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세부사항

귀하가 『집콕마켓』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b>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b>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 와 같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밀키트용)국탕, 반찬, 안주류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	집콕마켓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방법

-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알리는 절차	동의를 구하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점사업자 미동의→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침해하지 않기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판촉 및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쇼핑물 집콕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didimfood	가맹점 공급품목과 동일	가맹점 공급품목과 동일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앱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6조 제1항 상의 가맹점 주소지 및 영업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집콕마켓』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 2 ]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 2 ]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D, 아니오→A	
<b>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	D-day
<b>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b>	D-day
<b>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	D-day
<b>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하는 경우**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내용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물품공급 중단사유(아래 ☞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8.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9.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0.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10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7.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10.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1. 귀하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또는 온라인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3. 귀하가 경업을 하거나 귀하의 직원 등을 통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4조(“을”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15. 귀하가 기타 본 계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b>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즉시 해지 사유와 동일</b>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b>즉시해지 사유</b>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이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당사는 귀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동일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 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냉면 등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배달전문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16:00 ~ 02:00	365일 연중무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불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가맹점사업자 외 1명 (배달사원 제외)	직접 근무	33㎡(구. 약10평) 기준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등의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매출 현황,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관리내역 점검→상담일지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완료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총 광고비의 25% 중 귀하 부담분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카다로그 등 판촉물 제작 총 비용	해당 없음	판촉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권 발행	온라인·모바일 등 상품권 발행 총 비용	해당 없음		
	할인 및 경품 등 제공 판촉행사	판촉행사 기획에 소요되는 총 비용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기념품제공 등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행사 진행 안함

※ 귀하는 당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의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시스템, 조리법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당사의 계약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동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가맹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중도 해지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배상해야 합니다.

##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b>합계</b>	<b>33㎡(구. 약10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b>	<b>약 53일 내외</b>	<b>13~17페이지 참조</b>
<b>가맹희망자 문의</b>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53(1일)	비용 없음
<b>사업설명 및 상담</b>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52(1일)	비용 없음
<b>점포개발 및 상권분석</b>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9~51(13일)	자체비용소요
<b>최종협의</b>	- 임대차 계약 체결	D-38(1일)	자체비용소요
<b>가맹계약체결</b>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7(1일)	예치가맹금 : 21,500,000
<b>점포 실측 및 설계</b>	- 간판, 주방 등 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35~36(2일)	비용 없음
<b>각종 공사</b>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개점 전 교육	D-4~34(30일)	<b>13~17페이지 참조</b>
<b>개점준비마무리</b>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3(3일)	자체비용소요
<b>개점</b>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 시 영업활동 인력지원	개점 시 매장 운영 지원을 위한 직원 1명 인력 파견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전일부터 3일간	약 1,000,000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여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프랜차이즈의 이해, 회사의 이해, 조리 교육 등 개점을 위한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 메뉴얼 변경, 각종 매뉴얼 위반 및 매출 부진 등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하거나, 교육 수료 후 당사가 정한 기준의 교육 평가 및 리허설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개점할 수 없으며, 합격할 때까지 추가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1주간 2일	2,200,000	가맹점사업자	계약체결 시 예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서울경기 22만원 그외지역 33만원	추후 공지	교육시작 전일까지

※ 귀하가 개점 전 교육 수료 후 당사가 정한 기준의 교육 평가 및 리허설에 불합격하여 진행되는 추가 교육은 귀하가 특별 교육비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점 전 교육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추가 교육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